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인사”란 정관 제31조의 교원, 정관 제36조제1항의 직원, 정관 제40조의 조교, 정관 제41조의 학생을 말한다.
2. “외부인사”란 내부인사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총장후보대상자”란 총장추천위원회가 공모, 추천, 초빙 등의 절차를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총장예비후보자”란 총장후보대상자 중 총장추천위원회가 우선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총장후보자”란 총장예비후보자 중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선정한 3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제2장 총장추천위원회

제3조(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 5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과 내부인사 1명
2.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9명

③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총장 임기만료일로부터 5개월 15일 전까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고, 총장은 추천받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지체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지체 없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직무대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한까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기준 설정
2. 공모, 추천, 초빙 등을 통한 총장후보대상자의 모집 및 확정
3. 총장후보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4.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 토론회 등의 개최, 정책평가 등의 실시
5.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6.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7. 그 밖의 총장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5조(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5개월 전에 총장이 최초로 소집하며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총장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후보대상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상응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

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총장후보대상자가 된 때에는 의결 등 관련 절차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총장후보대상자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장추천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의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교체되지 아니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9조 또는 제10조에 위반하는 경우
4. 현저히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한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후보의 개인정보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의 총장추천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2. 제19조에 정한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

제10조(총장후보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총장후보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때에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선정과정에 있어 총장후보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장후보자의 모집

제11조(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자격요건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12조(총장후보초빙위원회)**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내에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9명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초빙절차를 완료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 ⑥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총장후보자의 추천

- 제13조(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모집된 사람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명단 확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 제14조(총장예비후보자의 선정)**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총장후보대상자 중에서 총장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한 사람은 이에 포함한다.
- ②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때에는 총장후보대상자별로 선정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선정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15조(총장예비후보자의 검증)**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다.
1. 상벌에 관한 사항
 2. 경력 및 자료의 진위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총장예비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의 검증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16조(검증절차)**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을 위하여 총장예비후보자에게 질문서를

보낼 수 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장예비후보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예비후보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 사항 중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의 감정 또는 관련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정책평가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교원과 직원, 조교, 동문,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정책평가(이하 “정책평가 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정책평가 등의 실시 및 결과 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교원, 직원, 조교, 동문,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로 선정된 명단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총장 임기만료 2개월 15일 전까지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의 활동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총장 선출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총장선출행정지원단)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로 총장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둔다.

② 총장은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구성하며,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일까지 존속한다.

③ 총장선출행정지원단에 단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되,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0조(회의록) ① 총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이 기명·날인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제반경비지원)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총장후보초빙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총장선출행정지원단 구성의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총장선출 행정지원단의 구성 시기는 이 규정과 달리 할 수 있다.